

꿈과 희망을 키우는 교육특별시 인천 조성을 위한

2020년도 교육지원사업 기본계획

시정혁신
보다 나은 인천

 인천광역시
<http://www.incheon.go.kr>
교육협력담당관



요 약

2020년도 교육지원사업 기본계획

□ 지원대상 : 인천 관내 유치원·초·중·고 939개 학교
 (유치원 402, 초 253, 중 136, 고 125, 특수학교 등 23)

□ 지원사업 : 3개 분야 21개 사업 112,051백만원

※ 2019년 대비 증 3.5%(3,759백만원) / 신규사업 3개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지 원 액		증감
		2020년	2019년	
합 계 (21개)		112,051	108,292	3,759
교육복지	소 계 (7개)	85,624	78,974	6,650
	유치원 및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	75,989	71,328	4,661
	친환경 우수 농산물 차액 지원	1,300	964	336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4,529	4,331	198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신규)	1,669	-	1,669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169	153	16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1,341	1,444	△103
	교육급여	627	754	△127
교육시설·환경개선	소 계 (5개)	24,690	27,416	△2,726
	학교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	5,053	4,369	684
	학교 노후시설 개선 지원	4,000	4,000	-
	도립고 이전비 지원	14,887	15,767	△880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인천형 미래교실 조성	600	600	-
	수산계고등학교 교육실습장비 지원 (신규)	150	-	150
	(구민월초교 이전부지 안전체험관 주차장 건설사업비 지원	-	2,500	△2,500
	매립지주변 학교 운동화 살균탈취건조기 지원	-	100	△100
	원도심 학교공간 활용 마을공동체 공간 어울터 조성	-	80	△80
수인양성	소 계 (9개)	1,737	1,902	△165
	수산계고등학교 특성화 지원	145	155	△10
	과제지원센터 및 북스타트사업 지원	56	56	-
	영재교육기관 운영 지원	146	155	△9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운영 지원	670	1,016	△346
	교육경비제한 군·구 교육기관 프로그램 지원	500	500	-
	생태·환경교육 및 학생동아리 운영	90	20	70
	자원순환 선도학교 운영 지원 (신규)	130	-	130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원			(비예산)
도서지역 수능수험생 지원			(비예산)	

순서

I. 추진근거	2
II. 추진방향	2
III. 2019년도 추진성과	3
IV. 2020년 추진계획	4
① 지원개요	4
② 지원계획	5
③ 추진일정	6
V. 행정사항	6
[붙임1] 2020년도 교육지원사업별 추진내용	7
[붙임2] 관련법령	14

- 꿈과 희망을 키우는 교육특별시 인천 조성을 위한 - 2020년도 교육지원사업 기본계획

- ◇ 학교 교육여건 개선 및 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을 통해 학생들에게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인천의 미래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함.

I 추진근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제8항, 제9항

- ⑧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⑨ 시·도는 관할구역의 교육·학예 진흥을 위하여 제2항 각 호 외에 별도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9395호)
-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II 추진방향

-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3無 실현(무상교복, 무상급식, 무상교육)
-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을 통한 지역간 교육환경 불평등 해소
 - 학교 노후시설 개선,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 인천형 미래교실 조성 지원 등
-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전문화 및 다양화
 - 영재교육기관 운영 지원, 생태·환경, 자원순환 교육
- 교육청과의 비예산 협력사업 강화, 지속 추진
 - 도서지역 수능수험생 지원, 진로체험활동 지원 등

- 2019년을 교육이 특별한 인천 만들기의 원년으로 삼고, 선제적 사업 시행
 -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연령 무상급식 “전국 최초” 실시
 - “전국 최초”로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인천형 미래교실 조성 지원
- 보편적 교육복지 제고를 통한 공교육 강화
 - 유치원·초·중·고 전 연령 무상급식 전면 실시
 - 763개교 319,128명 수혜 (저소득층 학생 포함) / 76,103백만원
 -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 53,444명(중학생 26,482명 고등학생 26,962명) / 1인당 266,000원 지원
 -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복지사업 지원
 -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미추홀학교, 해광학교, 장애인종합복지관) : 27명
 - 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50%이하) 교육급여 지원 : 20,575명
- 맞춤형 교육인프라 확충 및 환경개선
 - 학교 노후시설 개선 지원 : 130개교 166개 사업 / 4,000백만원
 - 학교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 : 14개교 4,369백만원(특별조정교부금)
 - 도립고 이전비(15,767백만원) 및 안전체험관 주차장 건설(2,500백만원) 지원 등
 -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인천형 미래교실 조성 지원 : 45개교 600백만원
-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및 영재교육기관 운영 지원 : 1,171백만원
 - 교육경비보조제한 군·구 교육기관 프로그램 지원 : 30개교 500백만원
 - 자유학기제 등 진로체험활동 프로그램 지원(“공무원 미리보기” 등 37개)
 - 「함께 만드는 꿈! Jump Higher! 자유학기제 지원」 ⇒ 2019년 지자체 국정시책 합동평가 우수사례 선정
- 교육협력사업 적극 추진
 - 문성학원 자연사 표본 강화자연사박물관 기증 추진
 - 도서지역 수능수험생 지원 등 각종 교육협력 현안 처리

1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인천 관내 유치원·초·중·고 939개 학교
(유치원 402, 초 253, 중 136, 고 125, 특수학교 등 23)
- 사업비 : 112,051백만원(국·시비) ※ 2019년 대비 증 3.5%
- 지원사업 : 3개 분야 21개 사업

교육복지 (7개 사업, 85,624백만원)	교육 시설·환경 개선 (5개 사업, 24,690백만원)	우수인재 양성 (9개 사업, 1,737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유치원 및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 ② 친환경 우수 농산물 차액 지원 ③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④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⑥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⑦ 교육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학교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 ② 학교 노후시설 개선 지원 ③ 도림고 이전비 지원 ④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인천형 미래교실 조성 지원 ⑤ 수산계고등학교 교육실습장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수산계고등학교 특성화 지원 ② 과제지원센터 및 북스타트사업 지원 ③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운영 지원 ④ 영재교육기관 운영 지원 ⑤ 교육경비보조제한 군·구 교육기관 프로그램 지원 ⑥ 생태환경교육 및 학생 동아리 운영 ⑦ 자원순환 선도학교 운영 지원 ⑧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원 ⑨ 도서지역 수능수험생 지원

○ 지원방법 : 사업비 지원 방식

- (교육청 진출) 14개 사업 105,144백만원

- 유치원 및 초·중·고 무상급식,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고등학교 무상교육
- 학교 노후시설 개선, 도림고 이전비, 영재교육기관 운영 지원
-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교육급여, 자원순환 선도학교 운영 지원 등

- (군·구 보조) 3개 사업 6,522백만원

- 친환경 우수 농산물 차액 지원
- 학교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
- 장애인 복지 일자리사업

- (학교 직접지원) 4개 사업 385백만원

- 수산계고등학교 특성화 지원, 수산계고등학교 교육실습장비 지원
- 생태·환경교육 학습 동아리 지원
-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원

② 지원계획

○ 사업별 지원 내역 (☞ 세부사업별 내용 : [붙임] 참조)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지원액		증감 (A-B)	사업내용
	2020 (A)	2019 (B)		
합 계 (21개)	112,051	108,292	3,759	2019년 대비 증 3.5%, (신규 3개)
교육복지	85,624	78,974	6,650	
소 계 (7개)	85,624	78,974	6,650	
유치원 및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	75,989	71,328	4,661	· 유치원 227개소 29,291명 · 초·중·고 518개교 316,552명
친환경 우수 농산물 차액 지원	1,300	964	336	·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 등 630개교(시설) 240,540명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4,529	4,331	198	· 중·고교 신입생 (53,666명) ※ 1인 지원액 277천원 범위 내(동복·하복)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新)	1,669	-	1,669	· 고교 2,3학년 123개교 48,403명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169	153	16	· 29명(연수구 10, 남동구 5, 부평구 14명)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1,341	1,444	△103	· 교육청 위탁(주안, 계양, 연수도서관) 시설물 관리
교육급여	627	754	△127	· 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50%이하)의 초·중·고 자녀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부교재비 등)
교육시설·환경개선	24,690	27,416	△2,726	
소 계 (5개)	24,690	27,416	△2,726	
학교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	5,053	4,369	684	· 중구 신광초 외 11개교 지원(특별조정교부금)
학교 노후시설 개선 지원	4,000	4,000	-	· 초·중·고 노후시설, 교육 기자재, 교육설비 개선 등
도림고 이전비 지원	14,887	15,767	△880	·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에 따른 서창2지구로 이전비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안전형 미래교실 조성	600	600	-	· 학교 공간혁신(교실형) (45개교)
수산계고등학교 교육실증비 지원 (新)	150	-	150	· 노후영어장 시설 및 장비 교체
(구)만월초교 이전부지 안전체험관 주차장 건설사업비 지원	-	2,500	△2,500	
매립지주변 학교 운동화 살균탈취건조기 지원	-	100	△100	· 계양·서구 소재 33개교 40개 운동부
원도심 학교공간 활용 마을공동체 공간 어울터 조성	-	80	△80	· 4개 학교(중구 2, 연수구 1, 계양구 1)
우수인재양성	1,737	1,902	△165	
소 계 (9개)	1,737	1,902	△165	
수산계고등학교 특성화 지원	145	155	△10	·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 ※해기사, 아쿠아리스트, 씨푸드산업 전문인 양성 등
과제지원센터 및 북스타트사업 지원	56	56	-	· 과제지원센터 8개관(32백만원) · 북스타트사업 6개관(24백만원)
영재교육기관 운영 지원	146	155	△9	· 영재교육원 및 지역공동영재학급(116학급)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운영 지원	670	1,016	△346	· 과학예술영재학교 운영비 지원(순수운영비의 25%)
교육경비제한 군·구 교육기관 프로그램 지원	500	500	-	· 교육경비 보조제한 기관인 동구, 용진군 학교 31개교 프로그램 지원
생태·환경교육 및 학생동아리 운영	90	20	70	· 학생동아리 20개교 지원 · 체험프로그램 운영학교 10개교 지원
자원순환 선도학교 운영 지원 (新)	130	-	130	· 자원순환 선도학교 20개교 지원 · 학생동아리 20개 지원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원			(비예산)	· 공공기관 및 기업체를 활용한 체험처 개발 등
도서지역 수능수험생 지원			(비예산)	· 수능대비 사전출도 도서지역 수험생 숙박, 교통 지원 (시-교육청-용진군-시설공단 협력사업)

③ 추진일정

- 교육지원사업 시행 및 추진상황 지도·점검 : 2020. 3. ~ 2021. 2월
 - 코로나19 관련 등교수업 연기 등에 따라 시기, 방법 등 탄력적 조정
- 2021년도 교육지원사업 신청 접수 : 2020. 7. ~ 8월
- 교육지원위원회 개최(정기회) : 2020. 9. ~ 10월
 - 2021년도 교육지원사업 지원(안) 심의 (※ 교육실무협의회 사전 협의)
- 2020년도 교육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 보고 : 2021. 1. ~ 3월

V

행정사항

- 지원사업 완료 후 정산검사 및 사후 관리 철저(사업주관부서)
 - 교부조건 이행여부 및 사업비 정산, 집행잔액 반납 등
 - ※ 정산검사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 마련,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 교육지원사업 내용 및 추진 성과 등 대시민 홍보 강화
 - (교육협력담당관)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종합적 홍보(기획기사 제공 등)
 - (사업주관부서) 개별 지원사업별로 추진사항에 대한 홍보

[붙임자료]

1. 2020년도 교육지원사업별 추진내용
2. 관련법령

1 교육복지 지원

① 유치원 및 초·중·고교 무상급식 지원 (교육협력담당관)

- (지원대상) 유치원, 초·중·고교 전 학년, 745개교(소) 312,435명
 ※ 총 345,843명 중 저소득층 학생 33,408명(전체 인원의 9.7%)은 교육청이 부담
- (지원내용) 식품비, 인건비, 운영비(시간제보조인건비, 소모품 등)
- (사 업 비) 315,966백만원(시 75,989, 군·구 47,660, 교육청 192,317)
 ※ 재원분담 : 시 24%, 군·구 15%, 교육청 61%(총 급식경비 기준)

② 친환경 우수 농산물 차액 지원 (교육협력담당관)

- (지원대상) 630개소 240,540명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중 신청학교(시설)
- (지원품목) 관내생산 친환경 쌀, 한우, 계란
- (지원내용) 친환경 급식재료와 일반 급식재료 구입비 차액 지원
- (사 업 비) 2,985백만원(시 1,300, 군·구 870, 교육청 815)
 ※ 재원분담 : (유·초·중·고·특수학교) 시 40%, 군·구 30%, 교육청 30%
 (어린이집) 시 55%, 군·구 45%

③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교육협력담당관)

- (지원대상) 중·고교 신입생 53,666명(중학생 28,154, 고등학생 25,512)
- (지원기준) 1인당 교복지원비 277,000원(전년대비 11,000원 증액) / 현물지급
- (지원내용) 동복 : 자켓, 조끼, 셔츠, 바지(치마) / 하복 : 셔츠, 바지(치마)
- (사 업 비) 14,865백만원(시 4,529, 군·구 2,903, 교육청 7,433)
 ※ 재원분담 : 시 30%, 군·구 20%, 교육청 50%

④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교육협력담당관) -신규

- (지원대상) 고교 2~3학년 (123개교 48,403명)
 - ※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제외) 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 (지원내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구입비
- (지원방법) 지원예산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
- (사 업 비) 84,298백만원(시 1,669, 군·구 1,366, 교육청 40,041, 국비 41,222)
 - ※ 재원분담 : 시 1.98% 군·구 1.62%, 교육청 47.5%, 국가 48.9%

⑤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장애인복지과)

- (지원대상) 특수교육기관 고등학교 3학년 또는 전공과 재학생
- (대상기관) 3개교 29명
 - ※ 연일학교 10명(연수구), 미추홀학교 5명(남동구), 해광학교 14명(부평구)
- (근로조건/보수) 주 14시간 이내(월56시간) / 월 481,040원
- (주요직무) 사무, 환경정리, 도서관 사서, 급식지원, 실버케어 등
- (사 업 비) 169백만원(시 43, 군·구 42, 국비 84)

⑥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도서관정책과)

- (지원대상) 교육청 위탁 시립도서관 3개관(주안·연수·계양도서관)
- (지원내용) 위탁시설물 관리비(도서관 운영경비), 개관시간 연장 지원 등
- (사 업 비) 1,341백만원(시비)

⑦ **교육급여** (복지정책과)

- (지원대상) 중위소득 50%이내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초,중,고)
- (지원내용) 학비(고1),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
 - (부교재비) 초 134,000원, 중 212,000원, 고 339,200원 / 연 1회
 - (학용품비) 초 72,000원, 중·고 83,000원 / 연 1회
- (사 업 비) 8,845백만원(시 627, 군·구 284, 국비 7,934)
 - ※ 재원분담 : (구) 시 7%, 구 3%, 국가 90% / (군) 시 10%, 군 10%, 국가 80%

2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

① 학교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 (교육협력담당관)

- (지원대상) 12개교 (중구 2, 미추홀구 1, 연수구 2, 남동구 2, 부평구 1, 서구 5)
- (사업내용)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원조건인 지자체 대응투자분 지원
 - 학생들에게 부족한 체육시설 및 다양한 실내 교수학습 활동 공간 제공
 - 주민을 위한 생활체육 및 평생학습 공간 마련,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활용 확대
- (사업비) 25,263백만원(시 5,053, 국가·교육청 20,210)

② 학교 노후시설 개선 지원 (교육협력담당관)

- (사업목적) 초·중·고 노후시설물 개선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 및 지역간 교육불균형 해소 기여
- (지원대상) 초·중·고 537개교 중 선정
- (사업내용) 중·소규모 노후시설 및 교육설비 개선, 교육기자재 지원
- (사업비) 4,000백만원(시비)

③ 도림고 이전비 지원 (교육협력담당관)

- (사업목적)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과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도림고 교육환경 개선 및 서창지구 학교문제 해결 위해 이전경비 지원 결정(2021. 8월 이전 예정)
- (사업내용) 도림고 이전경비 지원(부지매입비, 시설비, 교구비)
 - (위치/규모) 남동구 서창동 718 / 건축면적 4,564.67㎡, 연면적 15,528.97㎡

부지면적 (㎡)	학급수 (특수)	학생수 (명)	이전재배치 소요액 (백만원)				비고
			부지매입비	시설비	교구비	계	
15,311	30(1)	1,020	5,127	24,460	1,067	30,654	부지매입 조성원가30%

※ 현 도림고 부지와 건물은 인천시로 이관(약 165억원)

- (사업비) 30,654백만원(시비, 2020년 지원예산 14,886)

④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인천형 미래교실 조성 (교육협력담당관)

- (지원대상) 초·중·고 45개교 (공모를 통해 선정)
- (사업내용) 학습자 중심의 미래지향적 학교공간혁신사업 추진
 - 학교별 상황과 여건에 맞는 미래교실 학습환경 구축
 - 첨단 IT 장비와 교육이 융합된 인천형 첨단교실 구축 등
 - ※ 원도심지역 학교부터 우선 실시
- (사업주관) 교육청
- (사업비) 4,500백만원(시 600, 교육청 3,900)

⑤ 수산계고등학교 교육실습장비 지원 (수산과)-신규

- (지원대상)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
- (지원내용) 노후 양어장 시설 및 장비 교체 지원
 - 노후 시설 및 장비 교체로 학생 실습 안전성 확보 및 전공 역량 강화
 - 4차 산업에 부응하는 스마트 양식장 구축 기반 조성
 - 향후 양식어민들을 위한 스마트 양식 교육장으로 활용 가능
- (사업비) 150백만원(국비)

3 우수인재 양성

① 수산계고등학교 특성화 지원 (수산과)

- (지원대상) 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
- (지원내용) 수산계고교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 현장맞춤형어선사관 양성, 아쿠아리스트 양성, 시푸드산업전문인 양성, 해사전문인 양성, 수·해양냉동산업전문가 양성
- (사업비) 145백만원(국비)

② 과제지원센터 및 북스타트 사업 지원 (미추홀도서관)

[과제지원센터 운영 지원]

▶ 「과제지원센터」란?

-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사서, 교과담당교사를 연계하여 교육과정 관련 도서 및 정기간행물,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등을 구비하고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공공도서관 내 공간

- (지원대상) 8개 공공도서관(계양,부평,북구,서구,연수,주안,중앙,화도진)
- (수혜자) 초등학생 및 학부모
- (사업내용)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간 협력체계 구축 지원, 교과연계 및 학습자료(도서 및 비도서) 제공
- (사업비) 32백만원(시비)

[북스타트 사업 지원]

▶ 「북스타트」란?

- 영·유아의 평생 독서습관 형성을 위해 인천지역의 영아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북스타트 책꾸러미(우수도서 2권, 책읽어주기 가이드북 등) 배부 및 책놀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독서진흥운동

- (지원대상) 7개 공공도서관(계양,부평,북구,서구,연수,중앙,평생학습관)
- (수혜자) 관내 영·유아(3개월~취학전 아동)
- (사업내용) 북스타트 선정도서 구입 및 ‘책꾸러미’ 배부, 행사 및 강좌 등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사업비) 24백만원(시비)

③ 영재교육기관 운영 지원 (교육협력담당관)

- (사업목적) 잠재력이 뛰어난 영재아의 조기 발굴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각급 영재교육기관 운영 지원
- (지원대상) 33개 기관
※ 영재교육원 11, 지역공동영재학급 17, 소외계층영재꿈사다리 5
- (지원내용) 실험·실습재료비, 영재캠프 운영, 창의산출물 발표회 운영 등
- (사업비) 656백만원(시 146, 교육청 510)

4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운영 지원 (교육협력담당관)

- (사업근거) 과학예술영재학교 설립·운영을 위한 공동협약(2012.10.17.)
- (지원대상)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연수구 소재)
 - ※ 2016. 3월 개교 / 15학급 225명 (학년별 5개 학급, 학급당 15명)
- (지원내용) 과학 실험실습재료 및 교구 구입, 창의체험활동 지원 등
- (사업비) 3,060백만원(시 670, 교육청 2,390)

5 교육경비보조제한* 군·구 교육기관 프로그램 지원 (교육협력담당관)

- (지원대상) 동구, 용진군 관내 초·중·고 31개교
- (지원내용) 진로체험, 학력향상 및 창의인성개발 등 프로그램 운영비
- (사업주관) 인천광역시교육청(남부교육지원청)
- (사업비) 1,000백만원(시 500, 교육청 500)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 불가

6 생태·환경교육 및 학생동아리 운영 (환경정책과)

- (지원대상) 초·중·고 30개교
- (사업내용) 생태·환경교육 학생동아리 운영비 지원 (20개교)
생태·환경 체험프로그램 운영 (10개교)
- (사업주관) 인천광역시교육청
- (사업비) 90백만원(시비)

7 자원순환 선도학교 운영 지원 (자원순환과)-신규

- (지원대상) 초·중·고 20개교, 20개 동아리
- (사업내용) 학교교육과정 기반 자원순환교육 프로그램 운영,
단위학교별, 동아리별 체험활동 연계 실천과제 선정 및 운영
- (사업주관) 인천광역시교육청
- (사업비) 260백만원(시 130, 교육청 130)

⑧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원 (교육협력담당관)

- (사업목적) 자유학기제 등 진로교육 대상 학생에게 시 산하기관 및 협약기관을 통한 진로체험프로그램 발굴,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다양한 진로체험 활성화
- (사업대상) 관내 초·중·고등학생
- (사업내용) 인천시 산하기관 및 진로체험 협약기관 진로체험운영 (25개 기관, 37개 프로그램)
- (사업주관) 시 + 교육청
- (사업비) 비예산

⑨ 도서지역 수능수험생 지원 (교육협력담당관)

- (사업목적) 매년 기상악화로 배편이 끊길 것에 대비해 수능시험일 전에 미리 섬에서 나와 친척 집에서 지내는 등 불편을 겪어왔던 도서지역 수험생들에게 편의 제공,
- (추진근거) 대학수학능력시험 인천도서지역 수험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2019. 8. 21. 체결 / 시-교육청-옹진군-시설공단)
- (지원대상) 6개 도서 6개교 수능수험생
- (지원내용) 수능일 이전 출도에 따른 학습장소 및 숙식, 교통편 제공
- (사업주관) 시 + 교육청 + 옹진군 + 인천시설공단
- (사업비) 비예산 (숙식비 - 옹진군장학재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약칭: 지방교육교부금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848호, 2019. 12. 31, 일부개정]

-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과 관련된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 중 교부금과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 외 교육과 관련된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 재원 중 교부금, 제2항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9. 12. 31.>
- ②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증감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12. 31.>
1.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도(道)는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의 경우 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특별시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의 경우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광역시 및 경기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천분의 36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시·도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액 중 같은 항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되,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과 전출한 금액의 차액을 분기별로 정산하여 분기의 다음 달 말일(마지막 분기는 분기의 말일로 한다)까지 전출하여야 한다.
- ⑤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轉出金)의 차액은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⑥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미리 해당 시·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⑦ 시·도교육위원회는 제6항에 따라 편성된 세출예산을 감액하려면 미리 해당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⑧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⑨ 시·도는 관할구역의 교육·학예 진흥을 위하여 제2항 각 호 외에 별도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 ⑩ 시·도지사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연도별·월별 전출 결과를 매년 2월 28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시행 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95호, 2018. 12. 1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8.>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 9. 17., 2000. 12. 27., 2007. 12. 28.>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0. 12. 27.>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목개정 2000. 12. 27.]

제6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8., 2018. 12. 1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8.>

제7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1. 공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립의 유치원의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이 정한 방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2. 사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8.]

부칙 <제29395호, 2018. 12. 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시행 2017. 9. 25.] [인천광역시조례 제5854호, 2017. 9. 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공교육을 내실화 하며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지원의 대상) 이 조례의 교육지원 대상은 인천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 교육감이 인가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교육지원사업의 종류) 교육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01-02>

1. 지역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개정 2017-09-25>
- 1의2. 지역의 교육복지 증진 사업 <신설 2017-09-25>
2. 국제경쟁력 있는 우수인재 양성사업
3.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사업
4. 군·구 단위로 시행하기 어려운 교육지원사업
5.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2-01-02>

제4조(교육지원사업기본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내용, 지원규모와 지원방법 등에 대하여 제 10조의 인천광역시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심의 또는 협의를 거쳐 교육지원사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19>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우선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15-03-02>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교육청 세출예산안에 대한 협의회신을 할 때에는 교육감에게 해당 교육경비 지원을 우선적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5-03-02] <개정 2017-09-25>

제5조(예산의 계상 등) ①시장은 제3조의 교육지원사업에 관한 예산을 시 교육비 특별회계의 전출금(이하 “전출금” 이라 한다)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②전출금은 사업별로 목적과 조건을 지정하여 전출할 수 있다.

제5조의2(교육지원금의 자원등) 제5조에 따른 전출금 중 제3조제1호에 대한 교육지원금의 규모는 해당연도 본예산 세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지방교육세의 100분의 1이상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교육감과 공동으로 할 때에는 위의 금액에서 별도로 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09-25]

제8조(교육지원사업의 평가·관리) ①시장은 교육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이후의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평가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기관을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전출금의 반납) 전출금을 교부받은 자가 해당 사업의 정산결과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2-01-02>